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8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임미애·김정호·김한규

조계원 · 오세희 · 조인철

박민규 • 권향엽 • 허 영

김용민 • 이훈기 • 윤건영

박희승 · 위성곤 · 허성무

양부남 • 전진숙 • 백승아

홍기원 • 이용우 • 강준현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'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긴급지원 기간이 최장 1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,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,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

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.

또한,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·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6조).
- 나.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(안 제13조).
- 다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).
- 라.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 득·재산 및 금융·신용·보험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마.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결정, 선지급의 중지,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등 선지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양육비 선지급 금액,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 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·고시하도록함(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).

- 바.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,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따 른 사용료나 수수료를 면제함(안 제23조).
- 사.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 파기 업무를 이행 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).
- 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 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(안 제27조).

법률 제 호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
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양육비 선지급

제13조제1항 중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관계 기관의 장은"을 "제1항 각 호의 자는"으로 한다.

1.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

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

- 2. 법원행정처장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
- 3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

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"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"를 "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"로 한다.

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본문 중 "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"을 "여성가족부장관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"으로, "제출한"을 "제1항에따라 제출한"으로, "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"을 "금융정보등을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2항 또는 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2항 및 해2항"을 "제2항 및 제2항"을 "제2항 및 제2항 및 제2

제2항"을 "제2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, 제2항 및 제4항"을 "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"으로 한다.

-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.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장의2(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
-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)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(이하 "양육비 선지 급"이라 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 - 1.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
 - 2.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
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(이하 "선지급 신청인"이라 한다)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,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에 관한 기준(이하 "양육비 선지급 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선지급을 결정한다.
 - ③ 양육비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선지급 금액 기준은 부모합산소득(소득세 차감 전 소득으로서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양육비(전국의 양육자녀 및 부모가 각각 2인인 4인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소요되는 평균양육비를 말한다)표에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

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한 후 산출되는 실질양육비와 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야 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
- 1. 부모의 재산 수준
- 2. 미성년 자녀의 수
- 3. 자녀의 거주지역
- 4.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
- 5. 비양육부·모의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 인회생
- ④ 제3항에 따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야 할 비율은 부모합산소득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것으로 본다.
-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(선지급을 하는 경우 그 금액,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포함한다)를 결정하여 선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제21조의7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통보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,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

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(이하 "선지급 대상자"라 한다)가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- ⑧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- 제21조의7(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·질문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(이하 "선지급 신청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,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·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 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관계 중앙행정기관, 법원행정처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 및 시설 등에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

경우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·단체·법인 및 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21조의8(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 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.
 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7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,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 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9(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 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- 제21조의10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 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 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11(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 채무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 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

족부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2.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자

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.
-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과 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「전자정부법」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
- 2. 제13조, 제16조, 제17조 및 제21조의7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

제27조제1항 중 "제17조제5항"을 "제17조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

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	제6조(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	
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	
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(이하	
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,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의2.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</u>
	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에
	관한 사항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	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
및 지원에 관한 법률	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	제7조(양육비이행관리원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	6
업무를 수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	<u>4. 양육비 선지급</u>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⑦ ・ ⑧ (생 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제13조(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	제13조(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
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	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

요청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 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게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요청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비양육부・모 또는 양 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요청 등) 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
<u>자에게</u> .

- 1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 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비양육부·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
- 2. 법원행정처장에게 비양육부
 •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
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등록전
 산정보자료
- 3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
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제14조(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)

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(이하 "긴 급지원"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원을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일한

비양육부・모 또는 양육비 최	1
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지	\ \
<u>료</u>	
②	_
제1항 각 호의 자는	_
<u><삭 제></u>	

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,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긴급지원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긴급지 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 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 정한다.
-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4조의2(긴급지원 종료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

<삭 제>

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한다.

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관한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

<삭 제>

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14조의4(비용환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 육비의 반환 기간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제16조(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) ① (생 략) 에 관한 조사) ① (현행과 같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, 건강보험·국민연금, 출입국 등에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

<삭 제>

에	관한	조사)	1	(현행과	같
음))				
2					

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17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<u><신</u> 제17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<u>①</u> 여 설> 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

-----. ----<u>제21</u>조의6에 따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한다.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 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|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 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

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<u>금융정보·신</u>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u>다만</u>,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·보험정보를 요 철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

<u>금융성보능을</u>
<단서 삭
<u>제></u>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
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의
6에 따라 양육비가 선지급된
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양육
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
<u>청할 수 있다.</u>
<u>④</u> 제2항 또는 제3항
⑤ 제4항

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 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 다)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

<u>⑥</u> 제2항부터 제4항까지
<u>⑦</u> 제2항부터 제4항까지

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등이로 정한다.

<u><신 설></u> <신 설> _______

 ⑧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

 및 절차와 제2항부터 제4항까

 지 및 제6항

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
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
등)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
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
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
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
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
지급(이하 "양육비 선지급"이라
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

- 1.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 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등을 신청한 경우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

선지급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 자(이하 "선지급 신청인"이라 한다)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선 지급 금액, 지급기간 및 지급방 법에 관한 기준(이하 "양육비 선지급 기준"이라 한다)에 따 라 선지급을 결정한다.

③ 양육비 선지급 기준은 양육 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・의 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선 지급 금액 기준은 부모합산소 득(소득세 차감 전 소득으로서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양육비(전국의 양육자녀 및 부모가 각각 2인인 4인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소요되는 평균양육비를 말한다)표에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

가산 또는 감액한 후 산출되는 실질양육비와 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 야 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.

- 1. 부모의 재산 수준
- 2. 미성년 자녀의 수
- 3. 자녀의 거주지역
- 4.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및 의 료비
- 5. 비양육부·모의 「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
- ④ 제3항에 따른 실질양육비 중 양육비 채무자가 분담하여 야 할 비율은 부모합산소득에 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 차 지하는 비율과 같은 것으로 본 다.
-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 (선지급을 하는 경우 그 금액,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포함

한다)를 결정하여 선지급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의7에 따른 조사에 시일 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통 보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 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, 제5항 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 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 (이하 "선지급 대상자"라 한다) 가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변 경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양육 비 선지급 신청을 거절하거나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 는 변경할 수 있다.
- 8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 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

압류할 수 없다.

제21조의7(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· 질문 등)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및 선 지급 대상자(이하 "선지급 신 청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・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양육비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등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 환경 및 소득・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 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·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등의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가족관계

등록전산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 행정기관, 법원행정처, 지방자 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 •단체·법인 및 시설 등에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자료 이용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·단체·법인 및 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1조의8(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는 때에는 양육비 선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②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1조의6제7항에 따라 양 육비 선지급이 중지,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선지급 대상 자에게 알려야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알 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9(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 만,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 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

 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

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

다.

제21조의10(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 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 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 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 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 다.

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,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 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11(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

<신 설>

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 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.

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,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1 항의 고지 및 제2항의 통지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 리원의 장은 지급된 양육비 선 지급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거 나 회수 금액을 감경할 수 있 다.
- 1.
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
 따른 수급자

제23조(수수료) ① · ② (생략) <신 설>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

- 2.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소 득이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자
- 제23조(수수료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
 -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 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나 제공하는 정보등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.
 - 1.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양 육비 선지급의 신청과 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
 - 2. 제13조, 제16조, 제17조 및제21조의7에 따라 요청받은자료

제24조(업무의	위탁) ①	

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4. •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7조(벌칙)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			_		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<u>파기</u>
- 4.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벌칙) ① <u>제17조제5항</u>을 제27조(벌칙) ① <u>제17조제7항</u>----

-----**.**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 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